

『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을 당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,
-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 변경(안 제6조)
당초 : 일요일 → 변경 : 월요일
- 관람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- 행위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
- 변상책임 규정 삭제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당초 일요일이던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,
 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법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